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은 2005년 6월 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03. 7. 30)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계획의 체계화 및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II. 주요골자

- 가.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
-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구성위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자 중 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함
-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안 제6조)
- 라. 각 협의체에 1인의 간사를 두며,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 (안 제8조)

- 마.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함 (안 제9조)
- 바. 구청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안 제11조)
- 사. 협의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12조)
- 아. 협의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음 (안 제13조)
- 자. 협의회 출석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 제14조)
- 차.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음 (안 제15조)

III. 검토의견

1. 배경 및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정의 주요 과제로서 분권화
정책이 강도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 있고, 이와함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선정되어 분야별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등 앞으로
지방분권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 1. 29)되어 우리 구에서도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개정(2004. 12. 18)되어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한 바 있으며
-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사무성격이 강한 사회
복지분야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대신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소요
재원을 지방교부세 형태로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2004. 12. 30)
하였는 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제도 개혁과 함께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지역의 복지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지·보건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가 공동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복지·보건서비스 체계 확립이 요구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시기는 2005년 7월 31일부터로 하였던 바(동법 부칙), 이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관계법령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6개조의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각 조문의 내용은 2005년 5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및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입법형식 등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주요 검토사항

- 안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법 제7조의2 제2항의 내용을 보면,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이 민·관이 협력해 지역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관련 주체들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 제3조제3항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은 임원진이 공공 또는 민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 민간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동 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그 기능이 중첩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	주요심의내용	위원수	설치근거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사업 기본계획수립 ·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 · 보장기금의 설치·운영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규모 등 결정	9	구창장 방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대불금·부당이득금 결손처분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5	의료급여법
보육위원회	·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정책수립 ·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	16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의 조성· 운용·결산 등 승인	12	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아동위원회의회	· 지역내 아동의 생활실태조사 및 아동복지에 대한 원조·지원	38	아동복지법 아동위원회의회조례

참고로 정책결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시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6조)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IV.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721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 거. (생략)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7.30]

第4條 (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者는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相談·作業治療·職業訓練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住民의 福祉欲求를 調査할 수 있다.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부칙 <제6960호, 2003.7.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97호)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부칙 <제297호,200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